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경남)

I 기본 방향

1.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1)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장을 공모하여 공교육 변화 선도
- 2)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학교혁신을 이끌어 갈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 확대
- 3)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교장임용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 존중
- 4) 교장후보자의 역량 검증 강화 및 근무 학교 선택권 존중

나. 근거

- 1) 2021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 [교육부 교원정책과-7551\(2020.10.27.\)](#)
- 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5~6(공모교장의 임용평가, 자격기준 등)

2. 방침

- 가. 소외·낙후 지역 학교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교장공모 실시 학교 지정
- 나. 공모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모제 학교의 활성화 도모
- 다. 학교 및 지역사회 발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모교장 임용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

3. 2021.3.1.임용 교장공모제 주요 내용

○ 교육공동체 참여(내부형중 교장자격미소지 학교)

가.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나.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교직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심사에서 총점의 30% 반영

○ 공모교장 지원 '자격제한' 추가

- 가. 공모교장 실시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 제한
- 나. **초빙, 파견, 전보특례, 전보유예** 중인 교사 공모교장 지원 제한
- 다.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근무 1년 미만인 교원** 지원 제한
- 라.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일 경우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일 경우 고등학교 공모교장 지원 제한

4. 교장공모제 실시 대상 학교

- 기존 승진제도와 균형과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의 1β ~ 2β의 범위에서 교장공모 학교 지정

5. 2021학년도 상반기 공모대상 학교 수

구 분	공모대상 학교수					계
	정년퇴임	공모만료	중임만료	지역만기학교	신설학교	
초 등	16	11	1	0	3	31
중 등	34	7	0	0	2	43

6. 2021학년도 상반기 정년퇴임, 중임만료 학교 수

구 분	결원 예정교		
	정년퇴임	중임만료	계
초 등	16	1	17
중 등	34	0	34

7. 임용기간

- 임용기간 : 2021. 3. 1. ~ 2025. 2. 28.(4년)
- 임용기간은 4년 원칙, 다만 교장에 처음 임용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정년퇴직 시 임기 종료로 간주

8. 공모교장 임기 중 전직 금지

-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안정적인 자율운영 지원을 위해 **공모교장 임기 중 전직 금지(21.3.1.부터 적용, 기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자도 포함)**

Ⅱ 추진일정 및 주요 보고 내용

일 정	추진사항
'20.11.2.(월)	◦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통보
'20.11.12.(목) 16:00	◦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교장공모 실시 여부 및 요건, 학운위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도교육청)
'20.11.13.(금)~11.16.(월)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 통보 (도→지정학교, 각급 학교 및 기관)
'20.11.19.(목) 10:00~	◦ 교장공모제 업무담당자 연수 - 대상 : 운영위원장, 교감,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 장소 : 경상남도교육청 공감홀(별관3층)/강당(2층)
'20.11.19.(목)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현황보고 (도교육청 → 교육부)
'20.11.20.(금)~11.30.(월)	◦ 1차 공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정학교) 11일간
'20.12.1.(화)~12.7.(월)	◦ 재공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원자가 없거나 1인이 지원한 학교) 7일간 -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속 학교 중 지원자가 없거나 1인 이하인 경우 해당학교와 동시에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재공고
'20.12.1.(화)~12.7.(월)	◦ 학교경영계획서, 자기소개서 파일 제출 ◦ 지원 현황 보고 (고 → 도교육청, 초·중 →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동시 제출)
'20.12.8.(화)~12.16.(수)	◦ 학교, 교육청 심사계획 수립 및 사전연수 실시 ◦ 학교, 교육청 심사 규정(내규) 마련, 심사위원회 구성
'20.12.10.(목)~12.15.(화)	◦ 표절심사위원회 개최
'20.12.15.(화)	◦ 실시학교별 지원 현황 보고(도교육청→교육부)
'20.12.16.(수)	◦ 교장공모 학교 심사 실시
'20.12.16.(수) 심사완료 후	◦ 학교 심사 결과 보고 (고 → 도교육청, 초·중 →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동시 제출)
'20.12.23.(수)~12.24.(목)	◦ 교장공모 교육청 심사 실시 및 심사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제출)
'20.12.30.(수)~	◦ 학교·교육청 심사 결과 상위 3인 추천 ◦ 교육감 최종 1명 선정
'21.1.4.(월)	◦ 임용예정자명단 및 표절현황 보고(도교육청 → 교육부) ◦ 교육감의 임용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용('21.3.1.)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III 세부 시행 절차

1. 대상학교 지정

- 가. 교장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지역 근무연한 만기로 학교장의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를 실시학교로 지정 가능
- 나. 공립학교 중 정년퇴임, 중임만료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1/3~2/3 범위에서 실시학교 수를 지정
 - 공모 대상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서·벽지·농산어촌지역·소외낙후지역 학교, 공모교장 희망·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자율형공립고 등을 우선 지정
 -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공모학교로 직권 지정
- 다. 학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 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유형,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 학교에 한함)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마. **신설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설교 개교 준비를 위해 각급학교의 장의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경우 지정 가능**

2. 교장 공모 유형별 지원 자격 기준

유형	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장자격 요구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교장자격 미요구 (50%이내)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에 체능계고

3. 지원 자격 및 제한

가. 교장 공모유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국립학교 교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함

-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공모유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예정인자 포함(단,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 개방형의 경우 공모 범위는 전국임

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

다.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 지정 포함) 공모 교장에 현임 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라.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마. 임기 중인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 지원 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바. 초·중등 교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제한

사. 지원자는 1교만 지원 가능(2교 지원 시 공모 지원 무효화 함)

아. 현재 근무 중인 학교 지원 불가

자.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및 기관 근무 1년 미만인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지원 불가

차. 공모교장 실시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당해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 불가

카. 초빙, 파견, 전보특례, 전보유예 중인 교사는 공모교장 지원 불가

단, 전보유예자 중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 제27조 6항, 7항, 8항 해당자는 가능

타.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일 경우 관내 초·중학교 지원 불가,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일 경우 고등학교 공모교장 지원 불가, 전직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교장 지원 불가

파. 사립교원은 개방형 또는 내부형 중 교장 자격미소지자가 공모 가능한 학교만 지원 가능

하. 강화된 교장임용 제청 배제기준 적용

- 1) 공모교장 지원자의 교장 임용제청 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증
- 2)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심사 진행
- 3) 임용제청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 박탈
 -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단,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 폭행, 성 폭행, 성적 조작)는 동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4. 공고 및 지원 방법

- 가. 해당교육장, 해당학교장은 자격, 제출서류 등 선발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나.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8일 이내로 함
- 다.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회에 비공개
- 라. 공고문에는 해당 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 경남 교육 역점과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붙임 11]
 -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익일 부터 심사당일까지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단, 학교경영계획서는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교육청 심사당일까지 공지)
 -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학교 및 교육청홈페이지에 공지
 - ※ 발표, 면접 등 평가 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 불허
- 마. 공모교장을 지원하는 자는 해당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되, 공모교장 임용권자는 지원자 접수를 받은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재공고기간은 공모 교장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 ※ 1차 공고, 재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공모지정 철회
- 바. 공모교장 공모 공고 전에 구체적인 공모교장 요건은 당해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명기하여 교육청에 신청하되, 특정인을 위한 자격 요청은 불가(도교육청에서 검토 후 결정)

5. 공모 교장의 임용권자

공모 교장의 임용권(공모 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에게 있음

6. 공모 교장의 임기

- 가.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 나.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
- 다. 공모 교장은 임기 중 인사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

7. 공모 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 가. 공모교장이 당해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 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 공모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 나.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공모 교장을 전직 임용 하고자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 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인사조치 심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공모 교장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라. 공모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함
- 마.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 처리
 - 1) 당연퇴직(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 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 2)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사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 바.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 사. 공모교장 임용권자가 공모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을 때는 교육부에 보고를 하여야 함
- 아. 학교가 폐교되거나 분교장 개편 시에는 공모교장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 하여야 함(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의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음)

8. 공모 교장의 평가

가. 평가 대상은 초·중·고 공립학교 공모교장으로 함

나. 평가 주기

- 1) 도교육청 학교경영실적 평가계획에 의거 해당 공모교장의 임기 중 2회 실시
- 2) 공모교장 임기가 3년 미만으로 임용된 교장은 1회 실시 가능

다. 평가 관리기구

- 1) 시·도교육청 공모교장 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 설치
- 2)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을 수행
- 3) 평가위원은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

라. 평가 내용은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함

- 1)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 2)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는 적격성 검증

마. 평가 방법

- 1)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 2) 적격성 검증은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실시

바. 평가 결과 처리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인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은 시·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활용

9. 임기 만료된 공모 교장의 인사

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 공모교장에 임용될 당시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다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은 공모교장 평가결과 등에 따라 교장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음

☞ 교장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

나. 공모 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재임용 가능

< 구체적 인사 사례 >

- ▶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공모 교장 ⇒ 교장 중임
-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공모 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 중임
- ▶ 교장(중임) ⇒ 공모에 의한 공모 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공모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 교감 ⇒ 공모에 의한 공모 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 ▶ 교사 ⇒ 공모에 의한 공모 교장(내부형) ⇒ 교사 또는 공모에 의한 교장(내부형·초빙형)

10. 공모 교장 임용 절차

❖ 공모교장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 공모교장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및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 교장공모 공고(학교, 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교육청 심사(교육청(교육지원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가. 공모교장 임용권자는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지역 근무연한 만기 등의 사유로 학교장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장공모 실시학교로 지정하며, 개방형 공모 지정학교는 임용일 기준 4개월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고하도록 함

나. 공모교장 임용권자는 교장공모 목적, 임용기간, 제출서류 등을 정하여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전체를 교육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등에 공고하고 해당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 공고하되, 교육청의 교장 정기인사 이전에 임용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함

1)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8일 이내로 함

2)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3) 공고문에는 해당학교의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 교장의 필요 역량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공모 요건이 명시되어야 함

○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익일부

터 심사당일까지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심사위원 이메일 등으로 익명화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제공

○ 학교경영계획서는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교육청 심사당일까지 공지

※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가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됨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지원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서 징구

다. 공모교장을 지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 하되, 공모교장 임용권자는 지원자 접수를 받은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학교, 교육청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공모지정 철회**

라. 공모교장 지원자는 1교에만 지원할 수 있음(2교 지원 시 공모 지원을 무효화 함)

마. 공모 지정 철회 등

1) 교장공모 결과(재공고 포함)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지정 철회

2)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학교 수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공모 추진 할 수 있음

바.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 위촉 기준

○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하되,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 제자의 학부모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위촉 제한

○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 심사 시작 당일 명단 공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 이거나 위배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 무효화-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

2) 공모 심사 및 추천대상자 선정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후 3배수 범위 내 추천

-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교원, 외부인사(지역사회인사 등)의 위원별 인원을 사전에 결정

구분	내용	비고	
위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학부모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학교장 위촉 학운위에서 위원별 인원 사전에 결정	
학교운영위원회구성방법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0%)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40%)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 및 공모제 담당 교원 제외) 중에서 위촉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통보. 단,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교직원 전체회의 대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0%)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구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 이하가 되도록 구성 		

- 위원의 40~5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중에서 위촉
- 위원의 30~40%는 교직원 전체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교원(교장은 제외) 중에서 위촉
 - ※ 지원자 접수 종료 후 입후보자 없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선정된 교원에게 별도 안내
 - ※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 운영을 담당하는 교원은 심사위원 후보에서 제외
 - ※ 선정된 교원이 심사위원 수행을 거절할 경우 후순위자 선정
- 위원의 10~30%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 교원이 아니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해당 학교의 졸업생, 교육 관련 전문가,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사람 중에서 위촉

- 학교 공모 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50%이하가 되도록 구성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별 구성 비율은 위 내용을 준용함(국립학교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 심사 시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정 심사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단계적 심사 금지
- 학교심사 절차



- ※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는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내
- ※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사배점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예시)’

구분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서류심사
	학부모	교직원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0%반영	15%	15%	70%

- 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청 심사대상자로 추천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 후 3배수 범위 내 추천

-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 별도 구성
-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지역주민, 외부 전문가)를 50%이상으로 한다.
-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전직 교육공무원의 위촉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 학교 심사위원회 추천 후보자를 심층심사(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등)하여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 결정
- 상위 3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심사결과 처리는 학교심사 결과와 교육청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교육감에게 추천
- 교육청 심사 시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학교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 병행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 ※ 신설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로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공모 심사를 통해 순위를 명시하여 교육감에 3인 이내 추천
-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상의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여부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상의 승진임용제한 여부 등 사항을 확인하여 심사결과에 반영

<유의 사항>

- 학교, 교육청 심사 시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지
- 교장 공모제 취지에 상반되는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금지
- 심사항목에 교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 검증
-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로 인해 소수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필수 : 심사위원회 규정에 포함)
-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 하되 심사 결과는 비공개 유지
- 지원자에게 심사기준, 절차안내, 및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을 사전 안내

[교육감] 최종 1명 임용제청 추천

-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 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 * 교육감이 심사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자 중 1순위자가 아닌 2순위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
- ※ 교육감은 학교, 교육청 공모 심사를 한 경우 학교 심사 50%, 교육청 심사 50%를 반영하여 심사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되, **일정 점수(85% 수준)**를 얻은 적격자가 없으면 공모학교 지정 철회하고 임명으로 전환
- ※ 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가 임용제청 추천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고 심사진행, 임용제청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자격 박탈

사. 공모 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1)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공모교장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연수·교육을 반드시 실시
- 2)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당해 학교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성 등의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타 학교의 계획을 맹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3) 공모 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장의 공석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의 교장 임용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 따름
- 4) 공모 교장 지원자 또는 후보자가 공모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한 사실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심사를 무효화하고 교육감 추천 철회 또는 장관 임용 제청을 거부할 수 있음(사안에 따른 해당자 행정조치 예정)
- 5)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교육청공모 교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공개
 - ※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은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지원자의 신청이 있을 시 공개 가능 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의 경우 최소한 약력 등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공개시기, 기간,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함(예 : 박00, 교수, 00대학교)

아. 공모 교장 임용예정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는 국립학교의 공모 교장 임용권자와 교육감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임용

자. 공모 교장 지원 서류 표절 검증절차 및 처분기준

- 1)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 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징구
- 2)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 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 ※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3) 공모교장표절심사위 구성·운영 등 표절심사 제도화
 - 심사대상 : 지원자 전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 시·도별 DB화(전자화)하여 검증시스템 구축 완료('13.12월)

- 심사기구 : 교육청에 공모교장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5명 이내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간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3배수 추천 이전까지
- 대상범위 : '10. 9월 공모 이후 공모 교장 임용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 표절 판정시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함
- ※ 전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14.9.~)
 - 시.도교육청 공모 교장 지원서류 표절심사 협의회 구성.운영
 - 검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절 판정기준 마련 공유 등

11.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 명단

가. 초등학교(31교)

연번	급별	지역	학교명	구 분	자율학교(O,X)	비고
1	초	창원	명도초	정년퇴직	X	
2	초	창원	용남초	정년퇴직	X	
3	초	창원	용남초	정년퇴직	X	
4	초	마산	석전초	정년퇴직	X	
5	초	마산	중리초	정년퇴직	X	
6	초	마산	팔룡초	정년퇴직	X	공모만료
7	초	진해	경화초	정년퇴직	X	
8	초	진주	신진초	정년퇴직	X	
9	초	김해	김해부곡초	정년퇴직	X	
10	초	김해	김해신안초	정년퇴직	X	
11	초	밀양	밀성초	정년퇴직	X	
12	초	밀양	상동초	정년퇴직	○	
13	초	거제	기성초	정년퇴직	X	
14	초	창녕	창녕성산초	정년퇴직	○	
15	초	하동	북천초	정년퇴직	○	
16	초	합천	가회초	정년퇴직	○	
17	초	거제	신현초	중임만료	X	
18	초	마산	안계초	공모만료	X	
19	초	진해	대야초	공모만료	○	
20	초	진주	봉원초	공모만료	X	
21	초	통영	용남초	공모만료	X	

연번	급별	지역	학교명	구 분	자율학교(O,X)	비고
22	초	김해	봉명초	공모만료	○	
23	초	양산	서창초	공모만료	X	
24	초	양산	양산초	공모만료	○	
25	초	함안	함안초	공모만료	○	
26	초	창녕	길곡초	공모만료	○	
27	초	고성	마암초	공모만료	○	
28	초	산청	신안초	공모만료	X	
29	초	마산	마산고운초	신설학교	○	
30	초	양산	회야초	신설학교	○	
31	초	거제	거제용소초	신설학교	○	

나. 중학교(25교)

연번	급별	지역	학교명	구 분	자율학교(O,X)	비고
1	중	창원	반림중학교	정년퇴임	X	
2	중	창원	경원중학교	정년퇴임	X	
3	중	창원	삼정자중학교	정년퇴임	X	
4	중	창원	안남중학교	정년퇴임	X	
5	중	창원	반송여자중학교	정년퇴임	X	
6	중	창원	양곡중학교	정년퇴임	X	
7	중	마산	마산동중학교	정년퇴임	X	
8	중	진해	동진여자중학교	정년퇴임	X	
9	중	진주	진주봉원중학교	정년퇴임	X	
10	중	진주	반성중학교	정년퇴임	X	
11	중	진주	명석중학교	정년퇴임	○	
12	중	통영	사랑중학교	정년퇴임	X	
13	중	김해	김해여자중학교	정년퇴임	X	
14	중	양산	범어중학교	정년퇴임	X	
15	중	양산	원동중학교	정년퇴임	X	
16	중	함안	호암중학교	정년퇴임	○	
17	중	함안	함안중학교	정년퇴임	X	
18	중	남해	남해여자중학교	정년퇴임	X	
19	중	하동	청암중학교	정년퇴임	X	
20	중	거창	가조중학교	정년퇴임	○	

21	중	창원	남산중학교	공모만료	X	
22	중	진해	진해중학교	공모만료	X	
23	중	김해	내동중학교	공모만료	○	
24	중	의령	신반중학교	공모만료	X	
25	중	진해	웅천중학교	신설학교	○	

다. 고등학교(18교)

연번	급별	지역	학교명	구 분	자율학교(O,X)	비고
1	고	창원	창원용호고등학교	정년퇴임	X	
2	고	창원	창원명곡고등학교	정년퇴임	○	
3	고	진주	진주중앙고등학교	정년퇴임	X	
4	고	통영	충무고등학교	정년퇴임	X	
5	고	사천	삼천포중앙고등학교	정년퇴임	○	
6	고	김해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정년퇴임	X	
7	고	김해	김해제일고등학교	정년퇴임	○	
8	고	거제	거제공업고등학교	정년퇴임	○	공모만료
9	고	거제	연초고등학교	정년퇴임	○	
10	고	양산	웅상고등학교	정년퇴임	X	
11	고	창녕	영산고등학교	정년퇴임	○	
12	고	고성	고성중앙고등학교	정년퇴임	○	
13	고	하동	진교고등학교	정년퇴임	○	
14	고	함양	안의고등학교	정년퇴임	○	공모만료
15	고	마산	마산고등학교	공모만료	○	
16	고	김해	김해임호고등학교	공모만료	○	
17	고	양산	양산남부고등학교	공모만료	○	
18	고	남해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학교	○	

※ 신설학교는 교육부 승인 후 지정

12. 교장 공모제 지원자 제출서류 및 기타서식

가. 교장공모 지원서 2부 【붙임1】

나.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5쪽 이내(표지 포함) ()부 【붙임2】

다. 자기소개서 3쪽 이내(표지 포함) ()부 【붙임3】

라. 학교경영계획서 15쪽 이내(표지 포함) ()부 【붙임4】

마. 서약서(예시) 【붙임5】

- 바. 채점표(예시) 【붙임6】
- 사. 학교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예시) 【붙임7, 7-1】
- 아. 교육청 심사결과 보고서(예시) 【붙임8】
- 자.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붙임9】
- 차. 교장 공모 지원자 확인서 및 서약서(예시) 【붙임10】
- 카.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학교용) 【붙임11-1】
- 타.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교육지원청용) 【붙임11-2】
- 파. 공모요건 신청 양식(예시) 【붙임12】
- 하.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 거. 나이스 인사기록(전체) 출력물 1부(현 소속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출력 날인)
- 너. USB(지원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의 내용 포함) 1개
 - ※ (제출 부수)는 심사위원의 수에 따라 학교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교장공모 지원서(예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한 자		사 진 (3cm×4cm) ※ 최근 3개월이내 사진을 반드시 부착하여주세요
	생 년 월 일			만(세)		
	현 주 소		-			
	E-mail 주소		-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현 소 속			직 위		

학 력	. . .	고등학교 졸업	교 장 자 격	자격 종별	
	. . .	대학(교) 대학 과 졸업		자격증 번호	
	. . .	대학(교) 대학원 학과(학위:)		발급 일자	
	. . .	대학(교) 대학원 학과(학위:)			

일 반 경 력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요실적
				~	
				~	
				~	

교 육 경 력	구분	근무처	근무기간	근무연월 수	비 고
	교사		~		
	교감	(학교), (학교), (학교)	~		
	교장	(학교), (학교)	~		
	전문직	(), ()	~		

자 격	면허종류	취득일자	발행처	면허번호	외국어	기타
					영어 상중하	
					일어 상중하	
					() 상중하	

본인은 2021. 3. 1.자 00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합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인)

00 학교장 귀하

접 수 중

위 지원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직 : 성명 :
------	--	-----	--	-----	-------------

○○○학교장

【붙임2】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예시)

소 속 (기관명)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세)	현 직 임 용 일		소지자격 (교 원)	
학 력		주 요 교육경력			
주 요 활 동 ^ 실 적 요 약 v					
	<별지 계속 기재 가능>				
비 고	<근거서류 첨부>				

※ 주요활동 기재시 실질적인 활동이 드러나도록 작성

예1) ○○○교에서 3년 교장근무(x)

○○○교 3년 교장 근무 중 인성교육 최우수학교로 선정(○)

예2) ○○○교에서 5년 근무(x)

○○○교 교육과정부장 업무 담당 시 교육과정우수학교 선정(○)

【붙임3】

자기소개서(예시)

소 속		직 위		성 명	
-----	--	-----	--	-----	--

- ※ 성장 배경, 지원동기, 교육철학 등을 기재
- ※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

[별지 계속 기재 가능]

※ 작성 요령 : 자기이력 소개, 지원 동기, 교육철학 및 학교경영철학, 주요 업적 및 실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고 본 서식 준수

【붙임4】

관리번호	
------	--

학교경영계획서(예시)

소속	
직위	
성명	

학교경영계획서(예시)

소속		직위		성명	
----	--	----	--	----	--

I. 학교교육 목표

II.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경영계획서(예시)

III.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IV. 지역사회 연계활동

V.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 학교경영계획서 작성 시 참고 사항

1. 성격 : 교장임용 후보자의 교직원과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장상과 이의 실천 방법,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책,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한 학교경영의 핵심내용, 학교경영에 관한 포부 등을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작성함.
2. 주요내용 : 학교경영관과 교육비전, 학교교육목표설정과 운영,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설·환경·재무 등 일반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계획하는 내용
3. 작성 제출 방법
 - 가. 교장에 임용될 경우 자신의 학교 경영 소신과 비전에 관한 계획 기술
 - 나. 교육개혁 의지 및 개혁방안 등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 수록
 - 다. 표지 외의 내용에서 본인의 이름과 소속은 ○○○처리함

【붙임6】

채 점 표(예시)

지원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심사위원 평가내용								
소 속	성 명	평가요소						평가점 (100점 만점)
		... (%)	... (%)	... (%)	... (%)	... (%)	... (%)	
최종 평균점								

※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균점으로 함

※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붙임7】

학교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예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순 위	소 속	성 명	평가점수	비고

※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함

2020년 월 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장

○○○학교장 귀하

【붙임7-1】

학교 심사결과 후보자 추천서(예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순 위	소 속	성 명	평가점수	비고

※ 심사위원의 평가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평가점수로 함

2020년 월 일

○○학교 교장

경상남도교육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8】

교육청 심사결과 보고서(예시)

공모 학교	순위	지원자		평가점수			비고
		소 속	성 명	학교심사 점수 (50점)	교육청심사 점수 (50점)	합계 (100점)	
○○ 학교	1						
	2						
	3						
△△ 학교	1						
	2						
	3						

2020년 월 일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장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사실 확인서 및 서약서(예시)

본인은 2021. 3. 1.자 ○○학교 공모교장으로 지원함에 있어 다음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모교장 지원자로서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공개에 동의하며,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3.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표절이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 공모교장 지원 자격 박탈, 임용 추천 취소, 임용 취소 등의 모든 조치를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붙임11-1】

2021. 3. 1.임용 교장공모제 심사 점검표(학교용)

학교명		학교급	초등(), 중등()
심사일	2020. 12. .	공모유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영역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비고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의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었는가?	예 / 아니오 (위원수: 명)	학생수100미만은 5~10명 구성가능
	2) 심사위원의 40%~50%이 학부모로 구성 되었는가?	예 / 아니오 (학부모: 명)	
	3) 심사위원의 30%~40%이 교원으로 구성 되었는가?	예 / 아니오 (교원: 명)	
	4) 심사위원의 10%~30%이 외부인사로 구성 되었는가?	예 / 아니오 (외부인사: 명)	
	5) 운영위원은 50% 이하로 구성 되었는가?	예 / 아니오	
공정한 심사를 위한 노력	6)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받는가?	예 / 아니오	
	7)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안)및 심사표를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8) 심사기준(안)의 평가영역별 평가요소와 배점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9)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가?	예 / 아니오	
	10) 공모교장 지원과정 및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예 / 아니오	
	11) 심사배점을 심사위원회의 협의하에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하였는가?	예 / 아니오	
	12)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집계하며 비공개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예 / 아니오	
	13) 기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특이사항		

점검일: 2020. 12. .

점검자 OOOO도()교육지원청 장학사 성명 : (서명)
 확인자 ()학교 교 장 성명 : (서명)

【붙임12】 공모요건 신청 양식(예시)

()학교 공고 제 2020- 호

<p>()학교 공모교장 공고 ()학교 학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 ()학교</p>																																							
<p>1. 공모목적 가.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운영으로 학력 향상과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 요구 나. 확산적인 사고로 21세기를 주도하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 학교교육 환경조성 다.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선도적인 학교 역할 수행과 학교발전 기여</p> <p>2. 임용기간 : 2021. 3. 1. ~ 2025. 2. 28. (4년간)</p> <p>3. 공모절차 가. 학교 심사 : 본교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 나. 교육청 심사 :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3배수 추천 다. 교육감이 최종 선정</p> <p>4. 기본자격 및 공모 요건 가. 기본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의한 정년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 임용 예정일(2021.3.1)기준으로 당해 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단,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이상 4년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 임용제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자격 박탈, 4대비위로 인한 비위자는 동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 - 지원자가 없거나 1인 지원의 경우 공모지정 취소 나. 공모요건</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운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명기</p> <p>※ 지역여건, 학교특성, 공모교장의 필요 역량 등 경남교육 역점과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요건</p> <p>※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요건은 불가함</p> <p>※ 예) '독서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장'은 가능하나 '인문계고등학교 근무 경력자' 등과 같은 요건은 불가함</p> </div>	<p>5. 학교현황 가. 교직원 현황(2021. 3. 1.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직위</th> <th>교장</th> <th>교감</th> <th>보직사</th> <th>교사</th> <th>행정직</th> <th>계</th> </tr> <tr> <td>인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나. 학생 현황(2021. 3. 1.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학년</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계</th> </tr> <tr> <td>학급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학생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p>다. 학교특성(교육환경, 문체점 등) -</p> <p>6. 지원 서류 접수 가. 기간 : 2020.11.20.(금)~2020.11.30.(월) ※ 단, 토요일업일 및 공휴일 제외, 1차 공고 후 지원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 -재공고 기간:2020.12.1.(화) ~ 12.7.(월) 나. 접수처 : ()학교 교무(행정)실 (☎ 055- -)※ 우편접수 불가</p> <p>7. 제출서류 가. 교장공모 지원서(소정양식) 2부. 나. NEIS 인사기록카드(전체) 사본 1부. (학교장 원본 대조필) 다. 교육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부. 라. 자기소개서 ()부. 마. 학교경영계획서(15쪽 이내) ()부. 바. 확인서 및 서약서 2부. ※ 라, 마는 파일도 함께 제출 ※표절시 공모취소 및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임에 각별히 유의바랍니다.</p> <p>8. 기타 사항 가. 서류 미비 혹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나.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는 익명화하여 접수 마감일 익일부터 심사당일까지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 심사당일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시행 계획과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마. 학교 심사 일시, 장소는 접수자에게 추후 통지 바. 발표, 면접 등 평가 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은 불허 사.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p>	직위	교장	교감	보직사	교사	행정직	계	인원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학생수							
직위	교장	교감	보직사	교사	행정직	계																																	
인원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학생수																																							